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2. 15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6명(장호섭, 김정희, 임미연, 이선주, 손범구)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검토기간: 2024. 2. 2.(금) ~ 2. 8.(목)

2. 제안이유

-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3조 ~ 제4조)
- 로봇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(안 제5조 ~ 제6조)
-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등 (안 제7조~ 제8조)
- 협력체계의 구축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- 비용추계서: 필요시 예산 조치
-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로봇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으며,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미래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
 - 주요 내용은
 -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로봇산업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발전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로봇산업 진흥·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로봇산업 실태조사와 학계·연구기관·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실증, 인력양성, 공모, 특화거리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고, 로봇산업 관련 협력 기관·법인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 - 안 제8조에서 자문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·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